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50호
2. 발 의 자 : 이경숙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9월 1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II. 제안이유

- 최근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제작·유통되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저연령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호 및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당정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개최하고 피해 사안 대응을 주문하는 등 딥페이크에 활용된 AI 범죄 악용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였고, 교육부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음.
- 해당 개정 조례안은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

태조사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 심리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실태조사 의무 실시 규정
-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 실시 규정
-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심리 지원 사업 규정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참조
3. 입법예고 : 2024. 10. 23. ~ 10. 27.(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일 이정숙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50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 조사와 교육을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피해자 심리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한 피해<sup>1)</sup>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1]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sup>2)</sup>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 등
누적합계 (1.1.~9.6.)	434	12	179	243	350	11	151	188	184	617	588	27	2
1차조사 (8.27. 기준)	196	8	109	79	179	7	96	76	97	196	186	10	0
2차조사 (9.6. 기준)	238	4	70	164	171	4	55	112	87	421	402	17	2

1) 코로나 이후 아동 성착취물 246% 폭증… 줄어든 강력범죄, 온라인으로 자리 옮겨(서울신문, 2022.2.13.)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이투데이, 2021.6.10.)

2)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2024.9.9.)

-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에 따라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안처리 및 재발 방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이하 ‘가이드’ )” 를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sup>3)</sup>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예방·대응 요령 안내, 예방교육 동영상 개발 확대 등 긴급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직도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언론의 보도<sup>4)</sup>와 함께 여학생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하는 등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sup>5)</sup>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온 안심지원센터 전문상담원에게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즉시 삭제, 법률·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중고생 55%,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한국경제, 2024.12.12., 강영연 기자 기사 참조)

5) ‘딥페이크가 불안한 여중-여고생 82%, 피해자 될 수 있어 두려워’(동아일보, 2024.12.12., 최예나 기자 기사 참조)

[표-2] 학교 뱀피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6)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	여	중	고
장난으로	54.8	53.7	55.8	62.2	47.7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50.5	48.1	48.0	50.5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	44.1	42.5	45.6	39.4	48.5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31.1	44.8	35.4	40.9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	26.1	36.4	32.1	30.7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23.7	28.1	19.5	25.4	22.0
돈을 벌려고	20.4	23.2	17.7	18.7	22.0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	12.9	12.4	13.3	14.8	11.0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피해자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 실태조사(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동 조례 제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분리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피해를 사후에 지원한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 학교 뱀피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교육부 발표, 2024.12.11.)

- 물론 학교현장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 현재 학교폭력실태조사 일부 항목인 사이버폭력 부분만을 별도로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적, 예산적 측면에서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표-3]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항목

구분	목격 경험	피해 경험	가해 경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격 경험 여부</li> <li>-목격 후 행동</li> <li>-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li> <li>-향후 학교폭력 목격 후 대처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경험 여부</li> <li>-피해유형</li> <li>-사이버폭력 피해유형</li> <li>-사이버폭력 발생공간</li> <li>-피해빈도</li> <li>-가해자 유형</li> <li>-피해시간</li> <li>-피해장소</li> <li>-피해 후 알린 대상</li> <li>-피해 알림 후 도움 정도</li> <li>-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경험 여부</li> <li>-가해 유형</li> <li>-가해 이유</li> <li>-가해자 수</li> <li>-가해 지속 여부</li> <li>-가해 지속 이유</li> <li>-가해 중단 이유</li> </ul>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845, 2024.12.11.)

○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와 중복 우려, 학교 구성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안 제5조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포함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항목을 보다 구체화·세밀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체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방 및 대응 교육(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및 교원 대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성폭력방지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학교장 등에게 교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가이드 역시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은 선택적 내용이 아닌 법령에 따른 필수적 교육사항인바, 법적 체계적 측면에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표-3]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대상 학생 수가 적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표-4]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구분	2022	2023	2024
시기		3월~12월	
대상학교		초·중·고 신청교	
추진내용	- 해당 학년 학급수 모두 지원 - 전문강사가 학급별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 - 학생참여중심 교육방법 운영		
예산	1억7천7백만원	2억4천만원	2억2천만원
이수학교수(학급)	162교(1,006학급)	172교(1,201학급)	162교(1,000학급)
전체학교 대비 이수학교(%)	11.9%	12.6%	11.9%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육 대상 및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3)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동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중 ‘피해자 보호·지원’ 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피해자 보호 교원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지원사업’ 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사업’ 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를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사업’ 에서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동 조례 제6조는 피해자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조 제1항에서는 교육감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각호 중 제1호는 ‘피해자 보호 교원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지원 사업’ 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지원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피해자에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상 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명확히 피해자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 제6조제1항제1호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호는 피해자 상담 뿐만이 아닌 심리 지원 사업까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사업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요청, 법률·심리상담 등)이 있으며,

위(Wee)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 심리치유를 지원(상담, 일시보호, 치료비 지원 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보호, 대응 지원에서 더 나아가 심리지원까지 포함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리지원 사업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명문화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